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8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명	(주)다원녹화건설 (대표 김용각)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 7층(별양동, 교보빌딩)

2. 기술명 : 연속장섬유를 이용한 비탈면 녹화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쌓기부 일반 토사비탈면과 깎기부 비탈면(보강토사, 리핑암, 발파암, 숏크리트구간)에 코매트장섬유와 코매트조성물(식생기반재), 그리고 복원목표에 따른 혼합종자를 2재 1공정 분출방식으로 동시에 살포하는 생태복원형 녹화기술로, 시공초기 장섬유와 식생기반재의 결속력으로 강우에 의한 피해억제는 물론 수분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조기녹화유도에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또한, 장섬유는 토양 내에 수분을 고르게 공급하여 종사의 고른 발아유도 및 조기녹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연식생의 활성화 및 근계발달에 의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생태적 기능의 회복 및 비탈면 안정성 보강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4. 기술범위

- ① 비탈면 녹화를 위한 공법으로 응집력과 식생형성에 필요한 성분을 포함한 조성물(식생기반재)와 상호결합력에 대해 성능이 검증된 장섬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성물의 응집력을 보조하여 줄 수 있는 화이버 외 시공자재
- ② 조성물과 장섬유를 동시에 살포하여 2재1공정 시공이 가능한 취부기
- ③ 1과 2를 사용하여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절·성토 비탈면에 취부하는 식생기반재 뿌어붙이기 공종의 녹화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중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